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다17061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다170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2823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AB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BA)

【피고, 상고인】 최C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282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며느리인 박DA이 1999년경부터 같은 동네에 사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게 되자 2002. 2. 25.경 원고에게 2002. 4. 30.까지 2억 5천만 원을 월 2.5%의 이자로 지급하되, 이를 어기면 1일 0.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박D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연대보증약정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연대보증한 위 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내어놓은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가사 피고가 원심 변론에서 이미 그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연대보증한 위 채무와는 별도로 박DA이 8백만 원의 채무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주장의 변제 금액은 위 별개 채무의 변제에 전액 충당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 변론 종결 이전에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트렸다 한들 그것이 판결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